

행정기관명

수신

(경유)

제목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

- 「지방세법」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따라서 아래 표지된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귀하(귀 법인)에게 「지방세법」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신탁재산의 표시								
위탁자 (체납자)		성명 (법인명)		주민(법인·외국인) 등록번호				
		주소 (영업소)						
체 납 내 역	과세연도	구분	세목	과세번호	계	지방세	가산금	납부기한(당초)
	체납처분비							
	합계							
수탁자 (물적 납세의무자)		신탁회사명		법인등록번호				
		주소 (영업소)						
		납부할 세액						
		산출근거		※ 납세고지서 참조				

붙임 납세고지서 부. 끝.

발신명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